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38 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허 영·위성곤·박성준

임호선 · 전재수 · 박 정

강훈식 • 진성준 • 장철민

이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,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-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, 예 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·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 5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6540호) 및 「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53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4(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의5(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 고서(이하 "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8조의4(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
	계획서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
	체의 장은 기금이 기후변화에
	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
	서(이하 "기후변화인지 기금운
	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
	<u>야 한다.</u>
	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
	안에는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
	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	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기금
	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
	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	<u>정한다.</u>
<신 설>	제8조의5(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
	서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
	<u>장은 기금이 기후변화를 완화</u>
	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
	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기후변
	화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
	작성하여야 한다.
	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
	서에는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
	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
③ 그 밖에 기후변화인지 기금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